

초점

전자등기제 도입의 필요성

1. 머리말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새로운 담보수단을 모색하는 작업이 매우 활발하다. 그것은 1990년대 들어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capital adequacy ratio) 규제가 전세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제은행들이 자산의 건전성과 신용위험을 크게 의식하고 채권의 회수가 확실한 여신활동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활동에 으레 수반되는 상사채권이 담보수단으로 뒷받침된다면 기업들은 그만큼 유리한 조건으로 더 많은 자금을 빌릴 수 있고, 금융기관들도 채권회수에 안심하고 여신규모를 늘릴 수 있으며, 금융기관 보유자산의 건전성도 좋아지게 될 것이다.¹⁾ 국제적으로 상거래에 적절한 담보를 이용하여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되면 상거래가 활기를 띠고 국제교역이 증대되어 새로운 상거래 수요가 창출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대두되고 있는 자금조달의 불공평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²⁾

이처럼 기업활동과 금융의 원활화, 나아가 국제교역의 증대를 도모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의 활약상을 찾아본다면 구주개발은행(EBRD)의 모범담보법(Model Law on Secured Transactions)을 첫 손에 꼽을 수 있다. 구소련을 비롯한 체제전환국들에 대한 금융 및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1991년에 설립된 EBRD는 중·동구의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순조로운 경제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투융자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1994년 모범담보법을 서둘러 마련하였다. EBRD는 다른 국제금융기구와는 달리 공공부문보다도 민간부문에 대한 투융자 및 기술협력에 중점을 두고, 특히 현지 정부의 보증 없이 민간기업에 대하여 투융자를 하는 것이 특색이다.³⁾ 그러므로 차

1 박현일, “상사채권에 대한 새로운 담보수단의 모색”, 『상사법연구』 21권1호 (2002.5), 145면.

2 여러 국제기구에서 담보권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이유는 낮은 코스트로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라는 점도 있지만, 담보에 관한 법제개혁을 통하여 금융위기를 예방할 수 있고, 빈곤을 퇴치할 수 있으며 경제성장의 엔진으로서 부채에 의한 자금조달(debt financing)을 원활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산법제(insolvency regime)의 개선과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EBRD 참고자료 <<http://www.ebrd.com/english/trans/sectrans/modellaw/modlaw0a.htm>>; 佐藤安信·赤羽貴·道垣内弘人, “欧州復興開發銀行・模範擔保法の紹介と解説 (上)”, NBL No. 695 (2000.8.15), 73~

주인 민간기업이 채무불이행에 빠지는 경우에는 EBRD 스스로 현지의 민·상사 관련법에 의하여 채권을 회수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었다. 그런데 이들 구 공산국가에서는 한결같이 배타적 지배권으로서의 소유권이나 유한책임을 기초로 하는 주식회사제도나 사적 자치의 원칙이 미처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EBRD로서는 설립 초부터 그의 금융지원을 받는 국가들에 대하여 법제의 정비에 관한 조언과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한 당면 과제의 하나였다.

한편 1988년에 리스 및 팩토링에 관한 국제협약을 제정한 바 있는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협회(UNIDROIT)에서는 2001년 11월 「이동장비에 관한 국제담보권협약」⁴⁾을 체결하였다. 유엔 산하의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도 이에 뒤질세라 2001년 12월 「국제매출채권양도협약」⁵⁾을 제정하였다. UNCITRAL에서는 이와 함께 2002년 들어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VI)에서 담보권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⁶⁾

그밖에 유럽연합(EU)에서도 1997년과 1998년 소유권유보부(retention of title) 거래에 관한 지침시안(draft Directive on Delays of Payment)을 내놓았고,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에서도 개도국의 담보제도 정비를 위한 차관 제공 및 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에서는 미국·캐나다의 동산담보법의 영향을 받아 통일된 담보법제를 마련하기로 하고 모델법 작성에 착수한 바 있다.⁷⁾

75면; 현재 EBRD는 체제전환국의 공공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이 거의 중단되었고, 달리 자금을 조달할 길이 없는 민간부문에 대한 투·융자에 치중하고 있다. 그리고 폴란드, 슬로베니아, 체코, 헝가리 등 잘 살게 된 나라에 대하여는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논의도 있다. Frederique Dahan and Gerard McCormack, "Secured Transactions in Countries in Transition (The Case of Poland): From Model to Assessment", [1999] European Business Law Review, p.85.

4 2001년 10~11월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동 협약 및 항공기의정서의 정식명칭은 「이동장비의 국제적 권리에 관한 협약 및 항공기장비에 특별한 이동장비의 국제적 권리에 관한 협약의정서」(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and the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on Matters specific to Aircraft Equipment)이다.

5 채권양도협약은 1999년 UNCITRAL 실무작업반에서 「Convention on Assignment in Receivables Financing」이라는 이름의 최종안을 마련한 후 각국 정부, 국제기구의 코멘트를 수렴하여 수정안을 만들고 다시 상세한 주석을 첨부(UNCITRAL A/CN.9/489)하여 2001년 12월 유엔 총회의 결의로 이를 확정하였다. 협약 명칭에서 'Financing'을 빼고 'in International Trade'를 추가한 것은 협약이 금융거래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제상거래를 촉진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함이었다.

6 UNCITRAL, Report of Working Group VI (Security Interests) on the work of its first session (New York, 20-24 May 2002), A/CN.9.512. UNCITRAL에서는 새로운 담보권에 대한 법제를 모색함에 있어 모범법(model law)은 경직되기 쉬우므로 몇 가지 입법원칙을 정해두고 모범적인 법규정(model legislative provisions)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7 UNCITRAL, SECURITY INTERESTS: Current activities and possible future work, A/CN.9/475, 27 April 2000, p.9. <<http://www.uncitral.org/en-index.htm>>[2002.9.10]

그런데 이상의 새로운 담보법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살펴볼 때 특이한 것은 거의 예외없이 전자등기 내지 전자등록을 중요한 요소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등기/등록제(electronic registration)⁸⁾는 미국의 새로 개정된 통일상법전(UCC) 제9편(Article 9. Secured Transactions)에서도 그 도입을 전제로 규정되었으며 현재 폴란드, 헝가리 등 체제전환국과 캐나다, 일본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전자등기제의 도입배경과 이점, 시행방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2. 전자등기제는 왜 필요한가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담보수단이 인정된 예는 흔치 않았다. 굳이 예를 들자면 현재 상사채권에 대한 새로운 담보수단으로서 리스, 자산유동화(ABS) 등이 시행되는 정도이다. 리스의 경우 리스 이용자가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을 회수·처분할 수 있고, 자산유동화에 있어서도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전문회사(SPC)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대가로 유동화자산을 양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물적 담보 이외의 새로운 담보수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채무자를 위한 것이다. 이들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채권은행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담보수단을 제공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많은 자금과 신용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기업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담보수단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기준과 조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첫째, 새로운 담보수단을 통하여 채권자, 채무자 공히 채무비율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새로운 담보수단을 확보함으로써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신용위험(credit risk)을 줄이고, 채무자로서도 금융조건(financial terms)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간접적으로는 은행의 경우 새로운 금융수요와 영업기회가 창출되어 수익원이 확대되고 양질의 담보권을 취득할 수록 위험자산이 줄어들므로 재무구조가 개선되며, 채무자로서도 담보를 제공하는 만큼 추가차입의 기회가 줄어들어 모험적인 기업활동은 자제하는 대신 부채는 자진해서 갚으려 할 것이다.⁹⁾ 그러나 담보를 취득할 때 담보가치의 평가, 담보관련 서류의 작성 및 담보권의 등기·등록에 많은 비

8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으로서 등기와 등록은 그 취급기관이 법원 등기소나, 행정청이나 하는 차이가 있다. 본고에서는 채권양도, 일반 동산담보의 절차적 요건에 관한 국내 실정법이 미비되어 있지만 가급적 등기로 일원화하여 표기하고자 한다.

9 UNCITRAL, A/CN.9/496, p.5.

용이 든다면 그 효과는 반감된다.

둘째, 기업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그 종류를 가리지 말고 자산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기업의 기계·기구 등 동산이나 원재료·반제품 등의 재고자산은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전자는 공장저당권에 목록을 추가(공장저당법 7조)하거나 아니면 양도담보에 의하여, 후자는 판례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물양도담보의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¹⁰⁾ 그러나 많은 나라의 법제가 새롭게 인정하고 있듯이 채무자가 아닌 개별 자산 중심으로 금융을 이용[asset-based finance]하게 하거나 기업자산을 포괄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한다면 그만큼 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질 것이다. 특히 그 동안 저당권 이외에는 담보의 취득 및 관리가 어려웠던 항공기, 철도차량, 우주선과 같은 고가의 이동장비의 경우 대외 판매 촉진을 위해서라도 담보가치를 100% 활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셋째, 중요한 동산이나 권리는 채무자가 계속 사용·수익하면서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점유형 담보권(non-possessory security right)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채무자가 영업목적상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계속 점유해야 하는 경우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도 없고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는 구공산권 국가의 담보제도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¹¹⁾ 그런데 이러한 비점유형 담보권은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므로 그 거래가 투명해야 하고 이중양도 가능성에 대비하여 공시등록방법(public notice filing system) 내지 제 3자 대항요건(perfection)을 요하는 바,¹²⁾ 오늘날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자 등기/등록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넷째, 어떠한 내용의 담보수단이든지 그 나라의 기업도산법과 조화를 이룰

10 제강회사가 제품생산에 필요하여 반입하는 원자재를 일정 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소위 집합물양도담보권 설정계약에 있어서는 목적 동산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가 지정되고 그 소재 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대판 1988.10.25. 85누941. 따름 판례는 대판 1988.12.27. 87누1043; 1999.9.7. 98다47283.

11 동구권에서는 대부분의 나라가 동산에 대한 비점유형 담보권을 도입하였는데, 유독 체코 공화국만 큼은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fiduciary transfer of title)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담보제공 방식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EBRD식 담보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Tom Oliver Schorling, "Secured transactions in the Czech Republic - a case of pre-reform", *Law in transaction*, EBRD, Autumn 2000, pp.66-69; 한편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도 비점유형 동산담보제도를 속속 채택하고 있다.

12 UNIDROIT의 「국제이동장비담보협약」에 의하면 국제담보권의 등록사무를 수행하는 국제등록기관(International Registry)을 설치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등록관(International Registrar)과 등록사무를 감독할 감독기관(Supervisory Authority)을 두게 되어 있다. 국제등록기관의 유치를 둘러싸고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여러 나라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담보권은 중국적으로는 채무불이행시 이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만일 채무자의 도산절차가 개시되어 담보권 실행이 정지(stay)되는 경우 외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추급력이 미쳐야 한다.¹³⁾ 담보부 채권자로서는 도산절차가 개시되어 담보가치가 희석(diminution)되는 것을 원치 않고, 도산관리인(insolvency administrator)이 담보부 채권자의 권리를 부인 또는 제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되고 말 것이다.

다섯째, 오늘날 대부분의 거래가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담보제도가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국제간의 거래에도 널리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국제사법적 문제(choice of laws)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제거래에 기한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채권양도협약이 성립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임에 틀림없다.¹⁴⁾

요컨대 동산과 증서를 주 대상으로 하는 비점유형 담보권이나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의 금전채권 담보는 우리나라의 현행 담보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북한 지역에 시행할 수 있는 유력한 담보제도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모범담보법」(Model Law on Secured Transactions)이나 동구의 체제전환국들이 채택한 담보법이 비점유형 담보권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사용 동산을 제외한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있는 북한의 경우 더 한층 절실해 보인다. 더욱이 이들 새로운 타입의 담보는 정보기술(IT)을 적극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그 도입이나 유지·운영에는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전자등기제의 도입 사례

공시성이 부족한 담보권은 결국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possession)하여야 하는 바, 당해 목적물 위에 담보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된다면 얼마든지 비점유형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많은 나라가 인터넷 등 전자방식으로 담보권을 설정하고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내역을 공시하고 있다. 동구의 체제전환국 중에서도 폴란드는 1995년 6월 미국식 동산담보제도를 도입하고 세계은행(IBRD)의 차관을 얻어 전국적인 전산망을 구축하였으며, 나머지 나라들도 비교적 근대화된 담보제도를 영위하고 특히

13 UNCITRAL, A/CN.9/496, Para.24, p.6.

14 UNCITRAL, A/RES/56/81, Preamble & Art.28 참조.

헝가리에서는 1996년부터 담보권의 전산처리 시스템을 공증인협회에 맡겨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동산담보법(Personal Property Security Act)¹⁵⁾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보다 앞서 동산, 채권 등의 담보목적물의 등록(filing system)을 모두 전산화하였다. 설령 서면으로 등록을 하더라도 등록관이 그 기재정보를 입력하여 완전히 전자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된다. 따라서 컴퓨터 단말기만 있으면 금융기관, 변호사는 물론이고 누구나 담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이를 열람하거나 새로 입력할 수 있다. 담보 파일링 시스템에 직접 접속(access)하려면 신원 확인후 등록기관과 약정을 맺고 등록비용의 지급방법, ID, 패스워드 등을 정하여야 한다. 1~25년의 정기 또는 부정기(永久)의 등록기간에 따라 등록비용이 달라진다. 캐나다에서는 영어와 불어를 사용하는 바 기업의 경우 설립지 언어로 등록하면 된다. 대서양쪽 4개주에서는 이 시스템을 “ACOL”(Atlantic Canada On Line)이라고 부르는데, 초화면에서 ‘등록기관’, ‘신규등록/수정’, ‘조사·검색’ 등의 메뉴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채권자에게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자금을 융통하고자 하는 경우 담보로 제공하는 채권을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권 기타 그 대금’ 등으로 등록번호를 붙여 특정하게 된다. 담보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여부를 알아보려면 채무자(채권양도인)의 명칭, 주소나 담보물의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결과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¹⁶⁾

일본에서도 1998년 자산유동화(ABS) 제도를 도입하면서 법인의 지명금전채권을 등기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을 시행하였으며,¹⁷⁾ 지금은 인터넷으로 채권양도의 등기신청을 하는 것까지 받아주고 있다. 즉, 일본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등에 관한 법률」(“채권양도특례법”)에 의하면 법인기업은 금융기

15 캐나다도 아직도 프랑스 민법의 영향하에 있는 퀘벡주와 영미법을 적용하는 나머지 주로 나뉘는데, 동산담보법은 1974년에 이를 처음 채택한 온타리오주를 비롯하여 최근 이를 도입하기로 한 뉴펀들랜드주에 이르기까지 커먼로주에서 온갖 유형의 담보를 규율하는 포괄적인 법제도로써 시행되고 있다. 池田眞郎, 「債權讓渡法理の展開」(債權讓渡の研究 第二卷), 弘文堂, 2001, 207, 219면.

16 입력된 정보는 등록후 15일 이내에 본인에게 전달되어 등록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퀘벡주에서는 대출상한액까지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일부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은 잠재적 채권자(대출예정자)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상세한 내용을 검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채권양도의 경우 양도인의 채무자(제3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알아볼 수 없다. 퀘벡주에서는 프랑스 민법을 토대로 한 민법전(Le Code civil du Quebec, 1991)에 ‘채권과 동산물권의 등록’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상게서, 214~221면.

17 일본에서는 부실채권의 유동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목적회사(SPC)를 설립하기로 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양도금지 특약 등이 법적인 걸림돌로 대두되자 채권양도법제연구회를 설치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한 끝에 대항요건특례법을 제정하게 이르렀다. 대상을 법인으로 한정된 것은 특례법으로서 예외의 폭을 줄이고 상업등기부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장래채권의 양도는 특례법의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민법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 상게서, 139~140면.

관에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등기소에 전자방식으로 등기¹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매출채권(자산)의 양도 사실을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도 갖추고 채권액에 상응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4. 전자등기의 절차와 도입 효과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동산담보에 관한 전자등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자. 채무자가 보유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지, 매출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지 알아보려면 당해 채무자의 등기부를 열람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이에 관한 등기부는 부동산등기부와는 달리 '인적편성주의'를 취하도록 한다.

따라서 1차적으로 상법에 의하여 등기가 편철되어 있는 법인(상법 34조 이하, 180, 271, 317, 549조)을 대상으로 법인등기부에 '담보권등기'의 난을 두고 다음 사항을 등기하도록 한다. 2차적으로는 동산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인에 대하여도 담보권등기부를 편철하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자산양도 내지 담보제공의 공시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산양도의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6조)할 때에도 행하여지고 있다.

- 담보권설정자, 채무자(담보권설정자와 다른 경우), 담보권수익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금액 및 내용, 부대비용
- 담보권이 설정된 물건 또는 권리

18 일본의 채권양도특례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채권양도의 등기는 양도인 및 양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기 디스크(이에 준하는 전자기록매체 포함)로써 조제한 채권양도 등기 파일에 다음 사항을 기록함으로써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양도의 규정은 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준용되며 이 때는 채권양도를 질권의 설정으로 보면 된다(동법 10조). 일본의 등기소는 법무성 관할이며, 등록이 아니라 등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 양도인의 상호/명칭 및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2. 양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 상호/명칭 및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외국에 있을 때에는 일본내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
4. 등기원인 및 그 일자
5. 양도대상 채권의 총액
6. 양도대상 채권의 채무자 기타 양도대상 채권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것
7. 채권양도 등기의 존속기간(제2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50년 이내)
8. 등기 번호
9. 등기의 연월일

- 이상의 등록정보는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는 일정한 분량에 한한다.¹⁹⁾

만일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법원 등기소²⁰⁾에서 채권이나 지적재산권의 양도 외에 동산담보까지 전자방식으로 등기를 받아준다면 우리 경제·사회에는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²¹⁾

종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납품을 하면 4~5개월 짜리 약속어음을 받는 게 보통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돈 받으러 대기업에 드나들 필요도 없이 하루 이틀이면 대금을 결제받을 수 있다. 바로 어음제도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세금 혜택을 주는 등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기업구매자금대출(일명 “구매자금융”) 덕분이다.²²⁾ 그런데 그 거래구조를 살펴보면 어음을 폐지한다고 하면서도 납품업체는 대기업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고 지정은행에 매출채권의 추심을 의뢰한다. 즉 은행은 구매기업에 물품대금만큼 대출을 해주고 나중에 대금을 추심하여 대출원리금 상환에 충당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납품업체(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제한)가 대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지정은행에 양도하는 것임에도 이를 채권양도라고 부를 수 없다.²³⁾ 구매자금융 및 기업구매전용카드와 함께 시행되고 있는 전자방식의 외

19 등기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등록사항이 간결하고, 정확하며, 열람자가 다른 문서를 찾아볼 필요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명확히 규칙이나 지침으로 규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20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출채권의 양도 사실의 통지를 금융결제원에서 전자방식으로 하였을 때 이러한 전자인증에 대하여 확정일자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자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정경영, “전자외상매출채권 도입에 따른 법률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전산원 「제2회 e-비즈니스 법제도론회 - e-비즈니스 활성화와 전자금융」, 2002.8.22, 7~42면. 또 동산등기와 같이 전자등기제를 도입하기로 할 때에는 공증인협회에 전자등기업무를 위탁한다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는 민법 부칙 제3조와 같은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후자는 이미 전산시스템을 갖춘 법원 등기소에서 이를 부동산과 함께 일원적으로 관장하는 게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법적 타당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21 기업금융의 원활화를 위해 본격적인 채권양도, 나아가 통일시대에 대비한 동산등기담보를 취급하려면 ‘전자등기제’를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다. 부수적으로는 이에 관한 정보기술과 인력을 해외에 수출하는 기회도 생길 것이다. 박현일, “전자등기제 서두르자”, 한국경제신문 시론, 2002.5.28자 7면.

22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상대의 매출채권을 지정은행으로부터 대출형식으로 미리 결제 받는 ‘구매자금융’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 대출’이 널리 행해지고 있다. 이는 어음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당국의 지도와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 기업간의 주요 결제수단이었던 어음이 사라지고 있다. 중앙일보 2002.4.11자 33면.

23 그것은 우리 민법 제450조에서 채권양도시에는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그의 승낙을 얻어야 하고 제3자에 대하여는 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두어야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이 납품업체로부터 대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양도받겠다고 했을 때 채무자인 대기업이야 승낙을 하겠지만, 납품업체가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은행으로서 대항요건을 갖추는 일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받아야 하는데 온라

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금융결제원을 등록기관으로 하는 전자외상매출채권의 담보대출²⁴⁾도 팩토링과 비슷하지만 채권양도가 아니라 담보부 대출로 취급되고 있다. 만일 법을 고쳐 채권양도를 전자적으로登記할 수 있게 하고²⁵⁾ 여기에 대항력까지 인정해준다면 구매자금융거래는 보다 활기를 띠는 것임에 틀림없다.

5. 통일시대 북한 지역의 적용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에도 비점유형 담보권의 도입이 요청된다면²⁶⁾ 전자방식의 공시방법 즉 전자등기제의 시행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자원이 태부족한 북한의 현실에 비추어 새로운 담보제도의 정비도 시급한 터에 전산 시스템의 구축까지 병행 추진하여야 한다면 즉각적인 시행이 곤란해지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IT 수준에 비추어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것은 북한 지역에 송·배전시설을 새로 갖추는 것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고, 통신시설도 유선이 아닌 무선, 그것도 위성통신 방식으로 구축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러한 송·배전시설이나 통신시설을 빌려쓰기로 하면 전국적인 초고속 전산망 구축은 자동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컴퓨터 작업도 소수의 대형 컴퓨터(mainframe)에 의한 중앙집중식 처리가 아니고, 네트워크 상에서 서버-클라이언트(server-client)에 의해 분산 처리할 경우에는 전산화에 많은 비용을 투입할 필요도 없이 개인용 컴퓨터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KEDO가 북한에 ‘한국형 경수로’를 제안하였던 것처럼 미리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전산시스템을 가동해보고 똑같은 작업을 처리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대법원은 부동산등기부에 이

인으로 거래를 하다가 공증사무소를 찾아가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게 번거로워 할 수 없이 환어음과 추심위임이라는 편법을 쓰게 된 것이다.

24 손희성, “B2B에 있어서 기업간 전자외상매출채권의 현황과 과제”, 「전자금융의 법적 과제(1) - 전자유가증권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2002-3, 2002.5.16; 정경영, 전계 논문, 7~42면 참조.

25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전자등록제도가 일부 시행되고 있다. 그것은 자산유동화법에 의하여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유동화전문회사에 매출채권 등을 양도할 때 자산양도의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법에서는 앞서 말한 대항요건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실무상으로는 채권 등의 양도내역을 CD롬에 담아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려 일반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6 북한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케이스, 즉 ① 남한 기업이 북한의 개성 공단에 공장을 세우고 운영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 ② 체제전환 후에 북한의 기업이 시설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 ③ 북한 주민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무슨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면 비점유형 담보권만이 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어 법인등기부까지 전산화하고 있으나 그 이상은 근거법이 없어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적으로는 기업보유 동산의 등기, 매출채권 등 금전채권 양도 사실도 법인등기부에 등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법률을 하루 속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북한이 담보제도의 정비에 나설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작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만일 북한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남한과 전혀 다른 담보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통일이 되었을 때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터이므로, 북한측이 우리와 조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제를 채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통일이 된 후에는 남한의 법률제도가 북한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지만,²⁷⁾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이라 할지라도 북한의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담보제도를 권고할 수 있어야 하며,²⁸⁾ 차제에 국제적인 신조류에 따라 우리나라의 담보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가 북한의 담보제도 정비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남북 경협이 얼마나 긴밀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경제특구나 개성 공단에 입주하는 남한 업체들이 영업상 필요한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에 제도개선을 요구한다면 북한측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즉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북한내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민간기업의 대북 교역과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남북 경협 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적 과제라 할 수 있다.²⁹⁾

(박훤일 경희대 법대교수, 961-9393, onepark@khu.ac.kr)

27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대판 1961.9.28 4292행상48).

28 동구 국가들이 체제전환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의 하나는 가까이에 EU 선진국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폴란드의 경우에도 EU 국가들로부터 체제전환에 필요한 자금은 물론 선진제도·문물을 손쉽게 전수 받을 수 있었다. 북한에서도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의 우려가 불식될 수만 있다면 남한의 법제를 도입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동호, 「폴란드의 경제체제전환 사례연구」, 정책연구시리즈 98-01, 한국개발연구원, 1998, 79~80면.

29 조동호, 「정상회담 1주년: 남북경협 성과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정책연구시리즈 2001-03, 한국개발연구원, 2001, 86면.